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 통보서 []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와 소재지(명칭)			
상호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등록(허가)번호	
휴업 또는 폐업 사유			
휴업 또는 폐업 연월일			
휴업 또는 폐업 범위			
휴업기간			

「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통보(신고)합니다.

년 월 일

통보(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지역별 관광협회장 귀하

참고사항

관광사업(카지노업 제외)의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

첨부서류	휴업기간 또는 폐업 시 카지노기구의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카지노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